

붙임1 [농식품부]2021년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계획

1 추진 배경

-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17.9월부터 특정 시기를 정하여 매년 전국적으로 소·염소 일제접종 실시
 - 농가의 예방접종 소홀 및 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에 따른 접종 누락 등의 문제점을 일제접종을 통해 개선

<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

- ◆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 방법에 따르며, 축종별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 60%)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실시(사슴은 자율접종)

2 추진계획

《 기본방향 》

- ◆ 소, 염소는 연간 2회(4월, 10월) 예방접종 정례화
- ◆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 등의 접종 시술 지원, 전업규모 농가는 자체 접종
- ◆ 정기 백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소규모 100%, 전업규모 50% 보조)
- ◆ 일제접종 이후 전국단위 모니터링 검사 등 사후관리

1. 접종 대상

- 전국의 소·염소 10만 7천 농가, 446만 8천 마리
 - (소) 9만 4천 농가, 398만 1천 마리, (염소) 1만 3천 농가, 48만 7천 마리
 - 접종 제외 대상
 - ①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②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
 - ③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9212호, '20.11.26. 참고)
- * 이번 일제접종에서 제외된 가축은 지자체에서 별도 관리하여 추가접종 실시

◆ 새로 태어난 가축의 접종방법?

- ▶ (접종방법)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에 따라 1차와 2차 접종, 그 이후부터는 매년 2회 일제접종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
 - * 영국 베링거인겔하임社: (1차) 2개월령, (2차) 1달 후, (추가접종) 3~7개월 간격
 - * 러시아 아리아社: (1차) 소 4개월령 / 염소 2개월령, (2차) 1달 후, (추가접종) 3~7개월 간격
 - * 아르헨티나 바고社: (1차) 4개월령, (2차) 1달 후, (추가접종) 3~7개월 간격
- ▶ (유의사항) 백신접종으로 형성된 면역력 유지를 위해 6개월(최대 7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 실시

2. 접종 방법

(접종 기간) 2021. 10. 1. ~ 11. 12.(6주간)

- * 지자체는 자체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접종 시기를 일부 조정 가능
- 소·염소 : 연 2회 (1차 4월, 2차 10월)
- 사슴(자율접종 대상)은 마취 후 접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출산 또는 제각(除角) 시기(7~8월)에 맞춰 접종
- 단, 접경 지역(11개) 및 인접 시군(8개)은 1개월 앞당겨 실시(9.6.~)

| 구분 | 인천(2) | 경기(9) | 강원(8) |
|-------------|-------|------------------|----------------|
| 접경지역(11) | 강화·옹진 | 고양·파주·연천·김포 |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
| 접경 인접 시군(8) | - | 양주·동두천·포천·가평·남양주 | 춘천·홍천·양양 |

(접종 백신)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 백신(O+A형)

- 영국 베링거인겔하임社 : O(Manisa+3039) + A22 Iraq
- 러시아 아리아社 : O Primorsky + A Zabaikalsky
- 아르헨티나 바고社 : O1 Campos + A(24 Cruzeiro+2001 Argentina)

(접종 방법) 축주 혼자서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는 수의사와 포획 전문인력 등을 통해 접종과 포획(염소에 해당)을 지원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자체 접종

- 밀집 지역 등 방역 취약 대상도 수의사를 활용하여 접종 지원 가능

- 전업농가는 자체 접종하되, 고령 등의 이유로 자체 접종이 어려운 경우 접종반(수의사 포함)을 통해 접종 지원 가능
 - * 농가를 방문하는 접종(점검)반은 붙임 1의 농가 점검표 작성
 - **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접종을 즉시 중단하고 가축방역기관에 신고(이동제한 실시)
- 소의 경우 시·군에서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접종반에 제공, 접종반은 개체식별번호 확인 후 결과를 기록하여 시·군에 제출

3. 기타사항

- (백신 비용) '21년 기배정된 가축백신지원사업(농특회계) 예산
- (백신 공급) 상시 백신접종과 동일한 방법·조건으로 공급
 - (소규모) 시·군별로 일괄 구매하여 농가에 공급(보조 100%)
 - (전업) 농가가 직접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보조 50%, 자부담 50%)
 - * 염소는 소규모 농가에 포함하여 백신 공급
- (방역관리) 구제역 예방접종 전·후 방역관리 철저
 - (접종 전) 백신 접종반은 농장 출입 시 방역복, 마스크, 방역덧신 및 장갑 등을 착용하고 1 농장/1회 사용원칙 준수 철저
 - (접종 시) 올바른 접종요령 준수, 접종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접종 후) 접종 인력·차량 및 접종에 사용한 물품 세척·소독 철저
 - * 접종반은 농가 이동 시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차량·사람 소독을 반드시 실시하고 다음 농가에 출입

4. 사후관리

- (모니터링)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접종 후 4주 이내에 백신 항체(SP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실시
 - (검역본부)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관계기관(단체)에 알리고, 지자체 검사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우리 부에 보고
 - * 취약지역·축종, 밀집단지 등 방역 취약 대상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

- 시·도는 검역본부의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구제역진단과)에 송부
- (시·도/시·군·구)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을 명령하고, 4주 내 재검사 조치
- (농가 관리)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접종 누락 농가를 확인·관리
 - (축평원) 일제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를 확인하여 지자체에 농가 및 개체 정보를 제공
 - (지자체) 해당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부에 보고

3 조치 사항

- (결과 보고) 시·도는 일제접종 추진결과(주간, 최종)를 붙임 2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우리 부에 보고
 - * 시·도는 주간 단위 실적을 매주 화요일 16시까지 농식품부 담당자 온메일로 송부
 - 일제접종 대상 농가 중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기록·관리
- (홍보) 일제접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가에 홍보물 배포 및 문자 발송, 방역 기관(단체)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게시
 - 지자체·농협은 자가접종 실시 농가에 대해 백신 보관 방법, 예방접종 요령,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준수사항 등 교육·홍보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일제접종 홍보물(리후렛)을 제작하여 배포
 - * 일제접종 홍보물 내용은 농식품부, 검역본부와 협의하여 마련

2021년 10월 구제역백신을 일제히 접종합시다



접종대상

전국의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와 염소

▶ 사슴은 출산·제각(除角) 시기(7~8월)에 맞춰 연 1회 접종

접종시기

소·염소는 1년에 2차례 일제접종 (1차 4월, 2차 10월)

▶ 지자체의 자체 방역 여건에 따라 접종 시기 일부 조정 가능

접종백신

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 백신 (O+A형)

소 소규모농가(50두 미만)와 염소 농가는 시·군에서 일괄 공급하며,
소 전업농가(50두 이상)는 직접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

▶ 소 소규모와 염소 농가는 보조 100%, 소 전업농가는 보조 50%

접종방법

소규모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 수의사 등을 통한 접종 지원
전업농가(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 - 자체 접종



접종 전

백신 접종반은 농장 출입 시
방역복, 마스크, 방역덧신 및
장갑 등을 착용하고 1농장/
1회 사용원칙 준수 철저

접종 시

백신 접종요령 준수, 접종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접종 후

접종인력·차량 및 접종에
사용한 물품 세척·소독
철저



사후관리

- ① 일제 접종 4주 내 백신 항체양성을 모니터링 검사 실시
- ② 모니터링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소 80%, 염소 60%)미만 농가는 과태료 부과, 재접종 명령 및 4주 내 재검사 조치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합니다.



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농가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발생농장은 보상금 전액을 감액합니다.

* 신고 지연,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준수사항 불이행 시에도 보상금이 감액됩니다.



가축을 거래할 때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돼지·염소)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소·종돈)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 자돈, 어린 염소를 거래하려는 소유자 등은 어미 소, 모돈, 어미 염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을 기록한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구매자에게 인계 또는 휴대하도록 합니다.

농장 내부와 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외부인·출입차량 통제·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 일반인은 국내 축산농가의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관계자는 구제역 등이 발생한 국가의 가축 사육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철저

*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및 가축전염병 해외 발생 현황 등의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https://www.qi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방역수칙, 예방접종 요령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의심 가축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의심 가축 신고전화(국번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지방자치단체
1588-4060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내·외국인 구별 없이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전예약이
진행되오니, 하단의 접종 대상자 및 예약방법을 확인하시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예약해주세요

※ 본인이 해당하는 백신 사전예약 시기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참고



접종대상자 및 예약방법

- 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접종 순서대로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예약 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출되는 경우,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 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예약방법



(온라인 예약 - 본인 및 대리 예약 신청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http://ncvr2.kdca.go.kr>) 누리집에 접속하여 예약



(전화 예약 - 본인 및 대리 예약 신청 가능)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예방접종 현황'에 마우스를 올린 상태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화예약 운영현황' 클릭 후 지자체별 예약상담 전화번호 확인

- ②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등은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이 불가하며,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여권으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접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은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이 불가합니다. ⚠️

- ③ 여행 목적 등으로 한국을 방문한 단기체류자(90일 이하 체류)는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알 림 ※

- 사전예약 신청에 따른 예방접종 안내를 받고자 하는 등록외국인은 **휴대전화 번호를 현행화**하여야 합니다.
(전화번호 변경 시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정정 요청)
- 신분정보는 백신 접종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불법체류 사실 등이 통보되지 않습니다.
- 접종받을 수 있는 장소는 개인별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https://ncv.kdca.go.kr/>) 누리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Vaccination guide for foreign nationals in Korea



Foreign nationals can book their COVID vaccine by using the same method offered to Korean nationals. Please read the booking guideline and eligibility information provided below and book your Covid vaccine.

§ Check your allocated booking period by referring to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 (vaccination schedule plan)” at KDCA website. Please note the website is only available in Korean language only



Eligibility and booking methods

① You can book your vaccination date in line with the national vaccination plan as guided by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 (vaccination schedule plan)” if you are a registered foreign national. You can book a date via online or telephone.

- If a message indicating that you are not eligible for vaccination appears during online booking you can book your vaccine after registering at your local healthcare centre.

Booking methods



Via online (* A helper can book your vaccine on your behalf)

Visit <http://ncvr2.kdca.go.kr> and book your vaccine. Please note that the website is available in Korean only.



Via telephone (* A helper can book your vaccine on your behalf)

Contact a) 1339 KDCA call centre or b) visit <https://ncv.kdca.go.kr> → Place your mouse pointer "예방접종 현황 (Vaccination coverage statistics)" → Click the sub menu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화예약 운영현황 (List of local call centre contact information)" and find a centre run by your municipal government. Please note that the website is available in Korean only.

② Foreign nationals without a registration number (incl. illegal residents) CANNOT book their vaccine via online or telephone. This group of people can book their vaccine with a temporary code, which can be obtained by presenting their passport at their local healthcare centre.

⚠ Foreign nationals without a residence card cannot book their vaccine via online or telephone as well. ⚠

③ Short-term visitors, who are staying in Korea for less than 90 days for tourism etc. are not eligible for vaccination in Korea.

※ NOTICE ※

- If you wish to receive guides on vaccine booking, you must visit your local immigration office and update your mobile phone number.
- Personal information will solely be used for vaccination purpose only. Your identity and illegal stay history will NOT be relayed to immigration authorities as mandated by relevant law.
- Your vaccination centre option may be limited depending on whether you are subscribed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 Please visit <https://ncv.kdca.go.k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note that the website is available in Korean only.



법무부



질병관리청

붙임3**[법무부]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으니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불안하다구요?
안심하고 무료로 검사 받으세요!**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진료소 위치가 궁금할 땐 1339
통역이 필요할 땐 1345 또는 1330**

-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광안내센터(1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
|-----------------------------|-------------|---|
|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24시간 | 영어, 중국어 |
| | 09:00~18:00 |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
| (☎1330)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 | 24시간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 | 08:00~19:00 |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

